서울심리지원 4권역(중부)센터 운영 민간위탁(재위탁) 동의안

의 안 번 호 3213

제출년월일: 2022년 5월 25일 제 출 자: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은 서울시민의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, 교육 등 심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심리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민간위탁으로 4개의 센터 (1~4권역 센터)를 운영 중인 사무로
- 나. 4권역(중부)센터의 위·수탁 협약기간이 만료('22.9.30)됨에 따라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(재위탁)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(최초 동의 '21. 6. 21.)

2. 주요내용

- 가. 위탁사무명 : 서울심리지원 4권역(중부)센터 운영(사무형 위탁)
-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필요성
 - 추진근거
 - 「정신건강복지법」 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 - 「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시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 -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

○ 필요성

- 2020년 서울시민 우울감 경험률 6.3%(중앙값 5.7), 우울증상유병률 3.2%(중앙값 2.6), 스트레스 인지율 29.5%(중앙값 26.2) 등 대부분의 정신건강문제 지표가 전국 중앙값보다 높아 대책이 요구됨
- 현재 운영 중인 서울심리지원센터의 연간 이용 인원이 6,450명 (18년) → 17,359명(19년) → 19,051명(20년) → 26,515명(21년) 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서울시민의 심리지원 수요가 높아 '21년 추가 설치된 제4권역 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공공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및 지역별 심리 서비스 제공 불균형 완화가 필요함

다. 위탁사무 내용

- 개인별·집단별 맞춤형 심리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지조모임 구성 및 동료 상담가 교육 양성에 관한 시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
-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일반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
- 취약계층 대상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
- 그 밖에 시민의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항

라. 위탁기간 : '22. 10. 1. ~ '24. 12. 31.(2년 3개월)

마.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재위탁)

바. 소요예산 : 101,005천원('22년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화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

제11조(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,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- ②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생애주기 및 성별 정신건강 상 문제의 조기발견·치료를 위한 교육·상담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한다.

○ 서울특별시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

제4조(센터의 설치)

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심리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

- ① 시장은 심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리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.
 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
 - 2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 되어 있는 학교
 - 3.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증진 사업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노인·장애인·여성·청소년·노숙인 등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 - 5. 시립병원, 보건 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보건의료정책과 정신건강TF팀 박혜령 (☎ 2133 - 7548)